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10회 임시회

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
검 토 보 고 서

【의회사무국】



2025년 3월

운영위원회 전문위원

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(의회사무국)

2025. 3.
운영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(의회사무국)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
- 제출일자: 2025. 2. 26.(수)
- 회부일자: 2025. 2. 26.(수)
- 검토기간: 2025. 2. 26.(수) - 3. 12.(수)

2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
-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3. 추경예산안 편성 요인

-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
- 효율적인 회의장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 반영

4. 추경예산안 내역(의회사무국 소관)

가. 세입예산: 해당 없음

나. 세출예산

(단위: 천원, %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(%)
의회사무국	4,749,774	4,705,943	43,831	0.93
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	1,792,831	1,757,219	35,612	2.03
합리적인 인사행정	7,682	7,682	-	-
의회 발전 교육 및 교류	397,677	397,677	-	-
인력운영비(의회사무국)	2,443,973	2,443,973	-	-
기본경비(의회사무국)	107,611	99,392	8,219	8.27

□ 주요 사업 증·감 내역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예산액	기정액	증감액
달서구의회 외부간판 제작 및 설치	23,300	-	23,300
달서구의회 외부간판 전기공사	1,632	-	1,632
배부용 회의록 USB 및 케이스 구입	1,680	-	1,680
배부용 회의록 스캔 및 프로그램 설치	3,000	-	3,000
본회의장 수화카메라 교체	6,000	-	6,000
기본업무추진 급식비	14,985	13,320	1,665
공무출장을 위한 대구로택시(비즈) 사용료	1,728	-	1,728
기본업무추진여비	15,552	17,280	△1,728
사무용 OA가구 구입	904	-	904
비서실 컬러프린트 구입	950	-	950
정책지원팀 냉난방기 대체구입	4,700	-	4,700

5. 검토의견

- 달서구 의회사무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7억 4,9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.93%, 4,3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.
- 주요 증액 내역으로 달서구의회 외부간판 제작 및 설치 2,330만원, 외부 간판 전기공사 163만원, 배부용 회의록 USB 구입 168만원, 회의록 스캔 및 프로그램 설치 300만원, 본회의장 수화카메라 교체 600만원, 정책지원팀 냉난방기 대체구입 47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음. 또한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166만원 증액하고, 기본업무추진여비 172만원을 감액하여 공무출장을 위한 대구로택시(비즈) 사용료 172만원 신규편성하였음.
-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달서구의회 외부간판 제작 및 설치, 효율적인 회의장의 관리·운영을 위해 노후 시설 교체,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향후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통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